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사 무 처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 “3”을 “2”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서기 “3”을 “2”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행정사무관	· 16	· 17	+1
· 행정서기	· 3	· 2	-1
· 방송통신서기	· 1	·	
· <u>행정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사무운영서기보	· 2	· 1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행정사무관	· 17	· 18	+1
· 행정서기	· 3	· 2	-1
· 방송통신서기	· 1	·	
· <u>행정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사무운영서기보	· 2	·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